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4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제12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6년 4월 17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영의)

□ 제안이유

○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의 구 위임사무에 대한 단위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, 장수수당 지급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진공노면청소 차량운행 업무 및 환경기동반운영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세정과 소관 시세부과 징수사무에 관한 권한의 단위사무 중 체납처분, 결손처분, 관허사업제한, 서류의 송달, 징수촉탁, 공탁 및 세무공무원의 질문・검사사무의 납세자별 과년도이월체납액 500만원 미만은 구에서 처리하도록 함.(안 별표)
-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 중 장수수당지급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. (안 별표)

○ 청소과 소관 사무 중 진공노면청소차 관련 업무와 환경기동반(노조사 무 제외)관련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.(안 별표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O 없 음	○ 없 음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 - 없 음
- 나. 반대토론
 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 요지
 - 없 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
 - 없 음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505호			
의결	2006. 4. 19.			
년월일	(제126회)			

제출년월일 : 2006. 4. 5. 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의 구 위임사무에 대한 단위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, 장수수당 지급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한편.
- 진공노면청소 차량운행 업무 및 환경기동반운영 업무를 구 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등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세정과 소관 시세부과 징수사무에 관한 권한의 단위사무 중 체납처분, 결손처분, 관허사업제한, 서류의 송달, 징수촉탁, 공탁 및 세무공무원의 질문·검사 사무의 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00만원 미만은 구에서 처리하도록 함.(안 별표)
- 나.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 중 장수수당지급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.(안 별표)

다. 청소과 소관 사무 중 진공노면청소차 관련 업무와 환경기동 반(노조사무 제외)관련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.(안 별표)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제1호 세정과 1호의 단위사무명란중 바목·사목·자목·파목·거목·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단 위 사 무 명

- 바. 체납처분(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)
- 사. 결손처분(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)
- 자. 관허사업제한(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)
- 파. 서류의 송달(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)
- 거. 징수촉탁(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)
- 너. 공탁(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)
- 더.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(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)

별표의 제1호 가정복지과에 8. 장수수당에 관한 권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	적용 기관
8. 장수수당에 가. 장수수당 대상자 결정 • 부천시 장수~	수당 지급
관한 권한 및 지급 조례	

별표의 제1호 청소과 1호란에 나목란 및 다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 위 사 무 명	근거법적용	수임기관
나. 진공노면청소차 관리 및 운영	·「폐기물관리법」 제4조 1항	
다. 환경기동반 운영 및 복무 관리 (노조사무 제외)	·「폐기물관리법」 제4조 1항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1.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항

		현	행				개 정	안		
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	실과 소별	위 임 사무명	단위사무명	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
세정과	1. 시세부과	가.~마.(생 략)		구청		1	가.~마.(현행과 같음)			
	징수 사무에			장						
	에 관한 다									
	음의 권한	바. 체납처분	・「지방세법」 제28조				바. 체납처분(납세자별 이월체납액500만원 o			
		사. 결손처분	・「지방세법」제30조의3 ・동법시행령 제14조				사. 결손처분(납세자별 이월체납액500만원 o			
		아.(생 략)					아.(현행과 같음)			
		<u>자. 관허 사업의</u> <u>제한</u> 차.~타.(생 략)	・「지방세법」제40조, ・동법시행령 제28조 ・동법시행규칙 제15조				자. 관허사업의 제한(납 과년도 이월체납액500 제외) 차.~타.(현행과 같음)			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	행				개 정 안		
실과 위 임 소별 사무명 단위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	실과 소별	위 임 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
파. 서류의 송달	· 「지방세법」제51조,				파. 서류의 송달(납세자별 과년도		
	・「지방세법」제51조의2				이월체납액500만원 이상 제외)		
하. (생 략)					하. (현행과 같음)		
거. 징수촉탁	・「지방세법」제56조				거. 징수촉탁(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500만원 이상 제외)		
<u>너. 공탁</u>	・「지방세법」제62조				<u>너. 공탁(납세자별 과년도</u> <u>이월체납액500만원 이상 제외)</u>		
<u>더. 세무공무원</u> 의 질문·검사	・「지방세법」제64조, ・ 동법시행령 제49조				더. 세무공무원의 질문· 검사(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500만원 이상 제외)		

신 •구조문 대비표

	현	행					개 정 안		
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 적 용	수임	실과	위 임	단 위	근거법	수임 기관
		211110	적 용	기관	소별	사무명	시무명	적 용	기관
가정	1.~7.(생략)					1.~7.(현행과 같음)			
복지과									
	<u>〈신 설〉</u>					8. 장수 수당에_	가. 장수수당 대상자 결정	· 부천시장수수당	
						관한 권한	및 지급	지급조례	
-1 x -1		1 ()) = 20		-			1 (-1 -1 -1 -1 0)		
청소과	1. 「폐기물관	가.(생 략)				1	가.(현행과 같음)		
	리법」에 의	<u>〈신 설〉</u>					나. 진공노면 청소차 관련	· 「폐기물관리법」	
	한 다음의						<u>사무</u>	제4조 제1항	
	권한	〈신 설〉					다. 환경기동반 관련 사무	· 「폐기물관리법」	
							(노조사무 제외)	<u>제4조 제1항</u>	
	2. (생 략)					2. (현행과 같음)			